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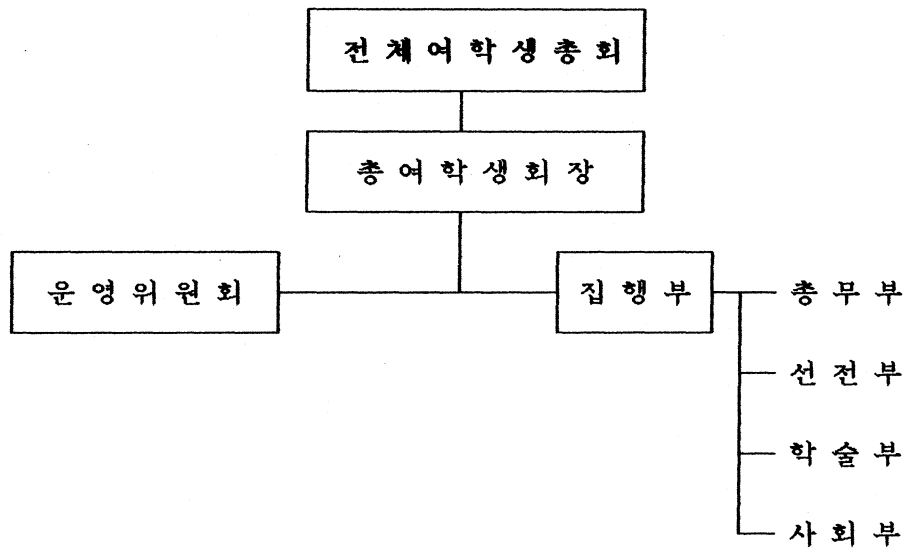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 회칙

목 차

1. 기구표
2. 전문
3. 내용

제 1 장	총칙
제 2 장	여학생총회
제 3 장	총여학생회장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5 장	집행부
제 6 장	재정
제 7 장	선거
제 8 장	회칙개정

1. 기구표



전 문

현재 사회에는 여성에 대한 제반 봉건적 굴레가 존속하며 또한 여성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이 땅의 피억압 집단으로 역사의 이면에서 숨죽이고 있던 민중여성들의 아픈 현실이 주목되어야 하며,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 일반의 소외는 극복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기의 여학우는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을 바탕으로 늘 깨어있는 의식과 예리한 지성을 겸비하여 사회의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고, 나아가 복된 민주국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이에 경기여학우는 학내 여성문제의 해결과 학원의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일보로서 여학생들의 독자적 자치기구인 여학생회를 창설하기로 결의하며 여학생회칙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는 경기대학교 총여학생회라 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여학생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기반으로하여 설립된 것으로, 민주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을 통하여 회원 각자의 주체성을 함양시키고 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신뢰를 돈독히 함으로써 대학의 참된 발전을 도모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제반 봉건적 굴레를 타파하고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지도자의 자질을 배양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며, 아울러 재정부담의 의무를 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본회와 회원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 이에 개별적·집단적으로 대항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5 조 (회의 구성)

본회는 제 2 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체여학생 총회, 총여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로 구성한다.(기구표 참조)

제 2 장 전체여학생 총회

제 6 조 (구성)

전체여학생 총회는 본 여학생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제 7 조 (권한)

전체여학생 총회는 여학생회 회칙의 전면 개폐 및 여학생 전체와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 8 조 (의장)

전체여학생 총회의 의장은 총여학생회장이 된다.

제 9 조 (소집)

1. 전체여학생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총여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2. 전체여학생 총회의 소집은 소집 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10 조 (의결)

전체여학생 총회는 회원 3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고,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총여학생회장

제 11 조 (지위)

1. 총여학생회장은 총여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집행부의 의장이 된다.
2. 총여학생회장은 총학생회 운영위원이 된다.
3. 총무부장은 총여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여학생회장의 궐위시 그 직책을 대행한다.

제 12 조 (임기)

총여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초년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업무 및 권한)

총여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여학생들의 제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할 의무를 갖는다.
2. 총여학생회와 여학생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심의, 조사할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3. 집행부 각 부장을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운영위원회 및 집행부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한다.
5. 총여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며 운영 위원회에 제출한다.
6.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에서 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7. 기타 총여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집행한다.
8. 위에서 명시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탄핵 받을 수 있다.

제 4 장 운영위원회

제 15 조 (지위)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의 최고 심의기구이다.

제 16 조 (구성)

총여학생회의 운영위원회 구성원과 각 과학생회의 여학생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업무 및 권한)

1. 총여학생회의 예산을 심의한다.
2. 총여학생회 회칙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는 회장, 집행부 구성원 중에서 누구라도 맡은 임무를 게을리하고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탄핵할 수 있으며, 제명을 결의할 수 있다.
탄핵은 운영위원 7인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여 해당임원을 전체여학생 총회에 호출할 수 있다. 3/4의 출석에 3/4의 동의로 한다.
4. 운영위원회는 1년에 4번의 정기총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총회를 연다.
임시총회는 총여학생회장과 운영위원 7인 이상의 발의로 열 수 있다.

제 5 장 집행부

제 18 조 (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집행 기구이다.

제 19 조 (구성)

1. 집행부는 총여학생회장과 각 부 부장으로 구성된다.
2. 각 부 부장은 업무 수행을 위해 차장 및 부원을 둘 수 있다.

제 20 조 (업무 및 권한)

1.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2. 총여학생회 일체의 사업 보고와 결산 보고를 운영위에 한다.
3. 각 부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그 산하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집행부는 제반 활동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총무부 : 서무 경리 및 총여학생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학술부 : 학내 여학생 학술 활동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선전부 : 총여학생회 선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사회부 : 학내 문제 및 사회 각 부분과의 연대 활동이 주가 된다.

제 6 장 재정

제 21 조 (경비)

1. 총여학생회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총학생회 예산 중에서 여학생회 예산과 그 보조비로 충당한다.
2. 재정 관리는 총무가 담당하되, 인출 및 집행은 총여학생회장의 결재에 따른다.

제 22 조 (회계년도)

1.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1년으로 한다.
2. 전항의 회계년도를 2기로 나누어 각 기마다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한다.

제 23 조 (예산 편성 및 심의)

예산은 집행부가 총여학생회 기구별 및 사업계획 항목별로 편성하여 제출한 것을 운영위가 심의, 조정 확정한다.

제 7 장 선거

제 24 조 (선거 시기)

총여학생회장 선거는 전년도 11월 중에 실시한다.

제 25 조 (피선거권)

본 대학 재학중인 여학생으로서 4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본 회 회원 10%이상의 추천을 받아 공동 입후보하여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26 조 (선거권)

본교 여학생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 27 조 (선거 방법)

1. 총여학생회의 선거관리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7인으로 구성한다.
2. 선거관리 위원장은 구성원 내부에서 선출하되 총여학생회장은 될 수 없다.

제 28 조 (보궐 선거)

1. 총여학생회장이 궐위되거나 운영위원회로부터 탄핵을 받아 제명 결의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집행부가 대행한다.

제 29 조 (선거 시행 세칙)

기타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선거시행 세칙에 따른다.

제 8 장 회칙 개정

제 30 조 (회칙 개정 및 발의)

본 회의 회칙 개정은 회원 30인 이상의 발의나 운영위원 7인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이를 즉시 공고하고 15일에서 20일간의 공고 기간을 거친 후 전체 여학생 총회에서 의결하여 회장이 이를 즉시 공포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순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